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 등〉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9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소재 · 부품 · 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 · 개편 (안 별표 1)	2
2. 소재 · 부품 · 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안 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철규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4. 7. 22.

다. 회 부 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국가재정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III.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IV. 검토의견

1.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안 별표 1)

현행	개정안
○ [별표 1]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별표 1]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개정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현행법 제4조¹⁾에 따라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의 제명을 종전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재원 및 용도 ＞

구 분	내 용
법률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명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재 원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 기준)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그 밖에 수입금
용 도	◦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 신뢰성향상, 실증·성능검증에 관한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 인력양성 및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투자 등 자금지원 ◦ 기술개발 다각화를 위한 인수·합병, 기술제휴,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업 ◦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설비운영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관 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첫째,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국회는 2019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부개정²⁾을 통해 법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포함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법」³⁾을 개정하였음.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수급 차질 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 탄소중립 등 정치·경제적 이슈 등과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들의 핵심산업 공급망 내재화·블록화를 위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국회는 2023년 6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였음.

이와 같이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이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개정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공포, 2020. 4. 1. 시행)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32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

쟁력강화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소재 부품장비산업법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특별회계 세출 용도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안”이라 함)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의 개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의 제명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안과 관계없이 개정 필요성이 있어 보임.

현행법 제4조에 따라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제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근거 법률의 개정 시에는 타법개정 또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근거 법률의 제명을 현행 법률명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은 2023년 개정 당시 제명 변경에도 불구하고, 타법개정 또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 정비 차원에서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별회계 또는 기금 설치 근거법률 제명 변경 시
「국가재정법」 개정 사례＞

법률명	법률번호	개정방식	개정내용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9. 30. 시행)	타법개정	별표 1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기술보증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 (2015. 7. 1. 시행)	타법개정	별표2 기금 설치 근거법률 「주택법」 → 「주택도시기금법」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제10893호 (2012. 7. 22. 시행)	타법개정	별표 1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환경정책기본법」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22. 「소재·부품·장비산업 <u>경쟁력</u> <u>강화</u>를 위한 특별조치법」	별표 1 22.-----<u>경쟁력</u> <u>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u>----- -----

2.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안 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 특별회계의 유효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	○ 특별회계의 유효기간 -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소재부품장비산업법안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이 확대·개정된 법률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동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안의 심사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그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소재부품장비산업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해 기간을 두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겠음.

다만, 특별회계는 단일회계주의의 예외로 설치되므로 특별회계를 도입할 당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는데⁴⁾, 특별회계 설치 당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운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11조 5,391억원을 조성⁵⁾하였는데,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6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2%, 중소벤처기업부 10.7% 등이며, 분야별로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8조 5,733억원, 74.3%), 기반구축(2조 437억원 17.7%), 자금지원 및 생태계구축(9,221억원 8.0%)을 각각 지원하고 있음.

4)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511p, 2024. 5.

5) 2020년 2조 745억원, 2021년 2조 5,541억원, 2022년 2조 3,963억원, 2023년 2조 3,462억원임.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영 현황(부처별) >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20,744	25,541	23,963	23,462	21,681	115,391
산업부	12,842	15,615	15,966	16,957	17,390	78,770
과기부	3,316	4,173	4,459	4,322	3,560	19,830
중기부	2,586	3,353	3,538	2,183	731	12,391
금융위	2,000	2,400	0	0	0	4,400

자료: 기획재정부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영 현황(분야별) >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20,744	25,541	23,963	23,462	21,681	115,391
기술개발	13,308	17,349	18,435	18,657	17,984	85,733
기반구축	4,021	4,328	4,058	4,443	3,587	20,437
자금지원	3,400	3,800	1,400	300	40	8,940
생태계구축	15	64	70	62	70	281

자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특별회계 운영을 통해 ① 불화수소 등 해외에 의존했던 핵심 소재에 과감히 투자함으로써 국산화에 성공하고, 흑연·희토류 등 공급망 리스크 품목의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중심 투자로 핵심기술 확보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②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며, ③ R&D 완료 과제에 대해 기반구축·사업화 사업을 신속히 연결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과제를 수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성과를 도출했다는 입장임.⁶⁾

특히, 2023년 6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체 세입 예산의 96%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⁷⁾ 특별회계로서의 독립 편성 의의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수입원이 세입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소재부품 장비산업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

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 2024. 8.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주요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1]** 참조

7)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정부출자수입 31억원, 기타재산이자수입 179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832억원, 기타재산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2조 2,170억원, 기금전입금 464억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422억원 등임.

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명칭이 2023년 6월에 이미 변경되었으며, 공급망·자원안보 문제 등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동 특별회계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는 연구개발, 기반구축, 자금지원 및 생태계 구축과 같은 직접적 지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첨단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민간재원에 해당하는 정부보증 채권을 통하여 융자·펀드 등을 주로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 위주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과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기능상 중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수입대체 등에서 핵심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을 위해서는 소재·부

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2호의 개 정규정은 <u>2024년 12월 31일까지</u> 효 력을 가진다.	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u>2029년 12월 31일</u>----- -----.

문의처

02)6788-5152

□ 주요 성과

①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대일 의존 100대 품목 핵심기술 확보

- (3대 품목) ①불화수소(초고순도 제조기술 확보), ②불화 폴리이미드(UTG 대체 소재 개발), ③EUV 포토레지스트(국산화 및 수요기업 공급) 등 기술 확보 및 생산
- (100대 품목) 대일 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 R&D 집중 투자
→ 이차전지 파워칩, 반도체 테스터, MLCC 등 54개 품목 기술 확보

☞ 대일 소부장 의존도 '19년 17.0% → '23년 14% (3%p 감소),
100대 품목 대일 의존도 '19년 30.6% → '23년 20% (10.6%p 감소)

②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등 소부장 생산기반 확충

- 수요(앵커)기업과 공급(소부장) 기업이 공동 입주한 소부장 전용 생산단지 10개('21년 5개, '23년 5개) 조성
 - * 반도체(용인, 부산, 안성), 디스플레이(천안·아산), 마라톤(광주, 대구), 창원(기계), 탄소소재(전주) 등
- 단지별 공동 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등 패키지로 맞춤형 지원

☞ '21년 지정된 5개 특화단지 성과 : '20년 대비 '23년 수출액* 55%↑, 고용 6,000여명↑, 입주업체 350여개↑ 증가

③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지원(총 71건 발굴)

- 소부장 핵심 품목에 대해, 연구개발 방향 설정단계부터 수요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공급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 ①수요·공급기업 연구개발 방향 공동 설정 → ②공급기업이 개발 → ③수요기업과 공동실증 → ④수요기업에 공급 → 기존 특정국 의존 거래 관행 탈피

<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개요 >

- (개요) 수요기업 참여 전제로, 수요-공급기업에게 공동 R&D·세제·금융 등 전주기 지원
 - (성과) 정전척·히터, 이차전지 파우치 등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자립화, 인조흑연(연 8천톤) **희토류 영구자석**(연 전기차 50만대분) 등 공급망 리스크 품목의 생산기반 구축
- * (CVD 장비용 정전척·히터) 국산화 성공 및 약 270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22) / (이차전지 파우치) 수요기업(L사)에 약 1.5조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22), 국내 수요의 약 43% 수준 생산 캐파 확보

④ 소부장 기업에 대한 ‘신속·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

- (연계 지원)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사업들을 하나의 회계 내에서 관리 → 단일 사업처럼 유기적으로 연계·지원

R&D	기반구축	사업화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 공급망 안정품목 R&D 등	⇒ • 소부장 특화단지 • 수요기업 양산테스트 등	⇒ • 소부장 펀드 • 소부장 정책자금 등

□ (부처협업) 소부장 분야 함께(이어)달리기 등 부처간 협업 활성화

* 과기부(원천)·산업부(상용화)·중기부(중기맞춤형) 등 → 중복 지원 방지 및 신속한 자립화

< 관계부처별 지원내용 >

구분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지원 규모 (‘24 정부안)	18개 사업 (1조 7,390억원)	14개 사업 (3,560억원)	7개 사업 (731억원)
기술 수준	TRL : 5~8단계 (산업원천/상용화 기술)	TRL : 1~4단계 (기초원천)	TRL : 8~9단계 (상용화, 사업화자금)
지원 분야	소부장 핵심전략품목 관련 자동차반도체 등 업종 특화 지원	소부장 핵심전략품목 원천기술 미래 유망 신소재 개발	소부장 핵심전략품목 중소기업 지원 (우수 연구인력 지원, 창업지원 등)

□ 소재부품장비 수출 · 입 현황

○ 수출 변동 현황

(단위 : 억불, %)

구분	'20		'21		'22		'23		'23.1~7		'24.1~7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전세계	3,002		3,635		3,737		3,336		1,876		2,078	

○ 수입 변동 현황

(단위 : 억불, %)

구분	'20		'21		'22		'23		'23.1~7		'24.1~7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전세계	1,976		2,483		2,639		2,434		1,447		1,406	
對 일본	340	17.2	393	15.8	395	15.0	342	14.0	205	14.1	196	13.9